

(주) 머스트자산운용 업무위탁 운영 기준

제 정 2016.09.29

개 정 2017.05.08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내지 제4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내지 제4-5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원칙)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3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내부통제의 약화 또는 회사 평판의 훼손 등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위탁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금지업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제외한 업무

나. 내부감사업무

다. 위험관리업무

라.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2. 투자매매업인 경우 다음 각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증권의 인수업무

3.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가. 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나.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4.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주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6.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7.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을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나.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

무

나.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원화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3.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나.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

다.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라.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4.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나.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 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다.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마.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바.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제4조(수탁자의 자격) ① 회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본질적업무인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당해 국가에서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 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업무위탁의 결정) ① 회사가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이 업무위탁을 하거나, 기존 업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리스크 분석, 수탁자에 대한 평가, 관련 법규준수 여부, 업무위탁의 절차, 수탁자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의 담당자(이하 "업무위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업무위탁팀장 또는 부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 위탁보수 및 수탁자 등 위탁에 관한 주요사항
2.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4. 기타 업무위탁팀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업무위탁팀장 또는 부대표이사는 업무위탁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은 제2항의 사항에 근거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는 업무위탁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수탁자의 업무능력 및 법규준수 능력 등을 파악한 후 업무위탁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특성, 중요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투자경험, 평판, 재무상황 및 재무구조
 2. 수탁자의 자산운용 관련 인허가 현황 및 법령 위반 등과 관련하여 최근 해당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사항
 3.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의 종류, 주기 및 방법
 4.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비밀유지 및 정보 보안 절차
 5. 회사의 자료 요청 및 검사에 대한 협조(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포함 한다)
 6.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회사가 제3조제2항 각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법령상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새로이 위탁하거나, 기존 업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 한다.
- ⑤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담당팀은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 신규계약의 체결 또는 주요 업무 처리시 관계법령,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해석 여하에 따라 상당한 법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① 회사가 업무수탁자와 체결하는 업무위탁 계약서에는 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규정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7.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회사의 소유권과 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9.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0.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12.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 13.우리나라 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 14.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5.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16.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 17.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되도록 한다.

제8조(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 ① 당사는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연장시 수탁자의 재무현황 자료를 징구하여 재무적 리스크 여부를 검토한다.

② 당사는 수탁자의 부도 징후 등 우발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9조(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 당사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 및 구두로 관련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제공 및 정보보호) ① 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과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 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 1. 수탁자의 지급 불능, 파산, 청산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 2. 업무의 전문성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위탁한 업무에서 발생한 거래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보고의 의무) ① 회사가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내용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회사는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시행령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위탁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상충방지체계)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영위시 회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수탁자는 회사에 지체없이 이를 알리고,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협의한다.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회사가 수탁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거법, 재판관할) 회사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관할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자인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재위탁) ① 회사는 시행령 제48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다시 위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재 위탁할 경우에는 제2조, 제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자, 재위탁계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및 재위탁 내용을 계약서류 등에 기재하고 투자자에 통보하여야 하는 자는 회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업무를 재 위탁받는 자는 다시 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제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한다.(2017.05.8. 법 및 시행령 개정 적용)